

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. 8. 14 사하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1992. 8. 14
- 다. 상정일자 : 1992. 8. 21

2. 제안설명의 요지 : 별첨 자료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: 별첨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최진두위원(질의) : 구 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각각 몇명으로 하며 그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도시개발과장(답변) : 공무원은 구청장,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며 그중에 구의회 의원이 포함됨.

이석래위원(질의) : 공무원과 구의원수를 3분의 1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차라리 5명, 12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으며, 공무원과 구의원이 6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?

도시개발과장(답변) : 3분의 2 이상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지만 12명이 됨

구본춘위원(질의) : 구청장, 부구청장을 제외한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구의원은 몇명이나 들어가는지? 과연 구의회 의원을 2

명정도 넣어 줄 수 있는지?

도시개발과장(답변) : 조례안이 결정되면 위원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공무원과 의원을 포함해서 5명임. 구청장, 부구청장, 도시국장, 사회산업국장을 포함하면 구의원은 1명 밖에 되지 않음.

5. 토론요지

- 박수관위원(찬성토론)

-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처리하던 것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함께 심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일이며
-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정책결정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.

6. 심사결과 : 부결(찬성 2, 반대 7)